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14. 6.18.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52호
전부개정 2020.00.00.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자”는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②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③ “연구결과물”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조사대상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 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조사” 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 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참여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연구소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②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결과물 창출 시,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률 10% 이내 결과서

3. 논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논문공저계획서

제3장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검증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

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는 연구기획과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연구소장이 된다.

②연구소장은 제17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연구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6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연구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문화재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6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보고) ①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1조(판정) ①조사결과의 확정은 조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조사)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며,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징계

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3년 이내 연구 참여 제한

3. 연구결과물에 대한 수정 또는 회수

4. 연구소 직원인 경우 성과급(성과연봉) 최하등급 지급 및 부서장 역량평가 최하등급 부여

5. 그 밖에 부정행위 규모.범위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연구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호, 2020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진실성을 추구하며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중복게재 등 연구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전문성, 안정성, 공공성을 추구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결과물명	*(논문/보고서)*
연구과제명	

점검항목			결과	
			네	아니오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변조	2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적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표절	3	타인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그대로 활용하였는가?		
	4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일부에만 표시하였는가?		
	5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6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7	인용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8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내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9	[직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3줄 이내의 문장을 글자체와 글씨크기를 달리하여 문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0	[간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자신의 글 속에 인용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가?		
	11	[재인용] 1차 문헌을 인용한 2차 문헌을 인용하면서 1차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것처럼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부당한 저자 표시	1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1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가?		
중복 게재	14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였는가?		
	15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16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추가해 저작물 목록을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가?		

위의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윤리 자가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____. ____. ____.

연구 참여자	자격	*제1저자*	소속		성명	(인)
	자격	*제2저자*	소속		성명	(인)
	자격	*교신저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논문 공저 계획서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참여 연구원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정관계자****(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정관계자의 유형(해당하는 란에 Ã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정관계자와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학술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개최지 및 개최기간: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 투고 예정일: 참여저자:	

□ 특정관계자가 상기 논문의 저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정관계자가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작성	최종원고확정
저자A				
저자B				
특정관계자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내역<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작성	최종원고확정	전체기여도	확인서명
저자A	( )%	( )%	( )%	( )%	( )%	
저자B	( )%	( )%	( )%	( )%	( )%	
특정관계자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예시)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들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A, 공저자는 저자B, 저자C(특정관계자)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심층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A가 하였고, 이를 저자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A	저자B	특정관계자
확인 서명			